**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**

**대 통 령 노 무 현 ㊞**

**2007년 6 월28일**

**국 무 총 리 한 덕 수**

**국 무 위 원**
**법무부장관 김 성 호**

## ⊙대통령령 제20118호

###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

「이자제한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07년 6 월30일부터 시행한다.

**◇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**
**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「이자제한법」이 제정(법률 제8322호, 2007. 3. 29 공포, 2007. 6. 30 시행)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이자율 및 경제사정과 우리나라와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연 30퍼센트로 정하려는 것임.

〈법제처 제공〉

**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**

**대 통 령 노 무 현 ㊞**

**2007년 6 월28일**

**국 무 총 리 한 덕 수**

**국 무 위 원**
**행정자치부 장 관 박 명 재**

## ⊙대통령령 제20119호

###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피경호인”을 “경호대상자”로 한다.

제26조제3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중앙인사위원회”로 한다.

제34조제2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실장이”를 “실장이”로 한다.

별표 3 중 “경호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 5”를 삭제하고, 그 다음에 “경호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5”를 신설하며, “경호주사 · 행정주사 · 전산주사 · 통신주사 또는 전자통신주사 5”를 삭제하고, 그 다음에 “경호주사 · 행정주사 · 전